

KBI 포커스

KBI FOCUS

07-08(통권27호)

공영방송사의 책무와 독립성

-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논란에 즈음하여

2007. 4. 15

요약

- I. 들어가는 말
- II. 공공기관 운영법과 공영방송
- III. 한국 공영방송 책무성 제도
- IV. 공영방송의 책무성과 독립성

요 약

- KBS와 EBS에 대한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이 1년간 유보된 상황에서 많은 논자들이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공영방송 규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반대하는 한편, 다른 논자들은 “공영방송도 최소한의 경영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 운영법’ 논란을 계기로 공영방송의 책임과 자유라는 두 개의 상충되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책무성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 보았음
-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서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의 바른 기능을 위해서는 ‘귀책성 모델’에 의한 외부의 강제적 규제보다는 ‘답책성’에 의한 내부의 자발적 해명과 설명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임
- 한국의 공영방송사들이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면 이들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며,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경영혁신 등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 의무 이행에 대해 기획예산처의 감독을 받게 됨
- 이것은 공영방송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지만, ‘독립성’이라는 공영방송의 주요 개념에 배치되는 것이 사실임
- 이미 KBS와 EBS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의 프로그램 심의, 방송평가, 방송 재허가를 위한 심사, 편성 규정 준수, 시청자불만처리 위원회를 통한 불만처리, 국회의 결산 심의, 시청자위원회, 국회 요청에 의한 감사원 특별 감사 등 다양한 책무성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시급한 것은 이들의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현실화하는 것임

I. 들어가는 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 2006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07년 4월 시행에 들어가고 한국 공영방송 KBS와 EBS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음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일단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 2007년 1년간 한국의 주요 공영방송들은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대상에서 유보되었음
 - 그러나 KBS와 EBS는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논란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서, 공공기관의 지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매년 새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것임
- 이미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한 공영방송 경영 감독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대두되어 왔음
 - 기획예산처장관은 시행령 등을 통해 KBS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시행령 상에 이에 대한 실행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고, 공영방송사와 언론노조 등은 이를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기도라며 격렬한 비판에 나섰음
 - 국회의원 61명은 KBS를 공공기관운영법 제외대상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반대 움직임에 대해, 공영방송에 대한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을 지지하는 측은 “공영방송도 최소한의 경영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대통령도 방송사의 이러한 저항이 ‘자사 이기주의’라며 이 법은 공영방송의 책무성

(accountability)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 통제와는 거리가 멀다며 반박한 바 있음

- 기획예산처장관도 KBS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KBS가 이에 따라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경영혁신’ 등의 의무만을 지게 될 텐데 이런 의무조차 수행하지 않으려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함
- 보수신문과 단체 또한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법리상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는 지정될 수 없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을 뿐”(공발연 성명서)이라며, 이는 방송의 독립성에는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법상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시해야 하는 관계로 경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
- 격렬한 의견 대립 속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지정유보’ 결정에 따라 KBS와 EBS의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은 일단은 1년간 미뤄졌으나, 법상의 적용 제외 기관으로 명시되지 않는 이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 셈임
- 본 보고서는 이번 ‘공공기관 운영법’ 시행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공영방송의 책임과 자유라는 두 개의 상충되는 가치가 상호 충돌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통합될 수 있는 개념인지를 이론적, 실증적 차원에서 분석해보자 함
- 사실, 공영방송은 각 사회 내 관련 역할자들, 즉 방송사, 신문사, 자본, 국가, 의회, 시민단체 등이 벌이는 논전(rhetoric battle)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회기구임
- 이러한 점에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 논란은 공영방송 정체적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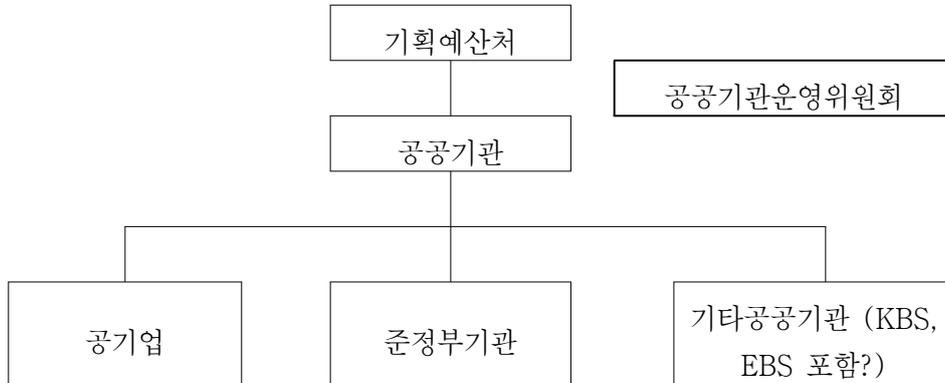
II. 공공기관 운영법과 공영방송

1.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KBS와 EBS의 규제

1) 공공기관 운영법의 구조

- 공공기관운영법은 과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폐지하고 통합해, 이 법률들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등을 새롭게 분류하고 이들의 책무성을 관리, 감독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법률임
-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제1조)
- 법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소속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매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지정, 지정해제, 변경지정 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2007년 4월 11일에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KBS와 EBS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였음
- 하지만 KBS와 EBS가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 가운데 의무 수준이 가장 낮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임

<그림 1>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 규제 구조



2)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영방송사의 의무와 정부 규제

- KBS와 EBS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 KBS와 EBS는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영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함
 -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
 - 감사보고서
 - 감사원의 시정 요구 조치 등의 내용
 -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 KBS와 EBS는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고객현장을 제정 공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고객현장에는 기관의 기본임무,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서비스의 수준,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 시정 절차 및 배상 등의 책임, 서비스 향성을 위한 노력 및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고객만족도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KBS와 EBS는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정부는 KBS와 EBS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능 조정 등의 의무를 지니게 됨
 - 기획예산처장관은 주무기관의 장(방송위원회 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한 후, KBS와 EBS가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주무기관의 장은 위에서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 집행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원활한 계획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3) 공공기관 운영법의 긍정적 효과

□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한 KBS와 EBS의 경영합리성과 경영효율성 제고 방안은 실제 아래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우선, 경영 현황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임. 공영방송은 독립성을 이유로 수신료 등 사회적 자산의 활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과 설명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케 함으로써 수용자 중심의 방송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공영방송은 시청자의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청률과는 다른 별도의 추상적 목표를 지니고 자기만족적 서비스를 제공, 수용자에게 서비스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해에 부응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임

○ 경영공개와 함께 경영혁신을 강제케 함으로써 경영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효과일 수 있음.

- 대다수의 공기업과 같이 뚜렷한 오너 십이 없는 공영방송 조직은 조직원의 불편을 초래하는 어떠한 변화보다는 현재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개별이익의 확보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음.

4) 공공기관 운영법의 부정적 효과

□ 그러나 경제부처의 공영방송 규제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됨

○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부처인 기획예산처가 공영방송의 기능과 존재 가치에 대한 의사결정력을 행사한다는 점임. 법에 따르면 기획예산처 장관은 KBS와 EBS의 '기능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나아가서는 "기관통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음.

- 아무리 주무부서장과 협의를 통한다고 해도 기획예산처가 KBS와 EBS의 기능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은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 비단 경제부처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기관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계획 등의 권한을 지니게 될 경우, 공영방송 존재조건의 핵심인 독립성을 해치게 될 가능성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임.
- 특히 여기서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조항은 기획예산처 장관의 권한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의무’로서 명시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공영방송의 사회적 필요성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뛰어 넘어서 ‘공기업 민영화’라는 정부의 일반적 목표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음
- 경영 혁신 또한 공영방송조직의 자발적 주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지침에 따르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일 때 이는 일반적인 공영방송의 기준에는 어울리지 않는 형태임
- 아울러 2007년 4월 공공기관운영회의 결의에 의한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는 정부기관이 법 적용 여부조차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운영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통제권을 경제부처에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 기획예산처가 이번의 ‘지정유보’에 대해 “KBS 스스로가 경영공시를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는 점에서, 법 적용여부를 놓고 방송사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일종의 협상을 시도하고, 정부기관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 되고 이러한 협상 가능성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 것임

- 오랜 독재시기를 거치면서 스스로 공영방송의 전문인 문화를 만개시키지 못한 KBS와 EBS 종사자들은 민주화 이후 겨우 정립해나가고 있는 공영방송문화를 버리고 다시 정부의 관여를 받는 공기업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될 것이 우려됨. 이는 서구 공영방송이 어떠한 외적 환경 변화에도 큰 요동이 없이 지켜내고 있는 상황과는 상치되는 모습이 될 수 있음.

2.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한 공영방송 규제 시도의 배경

1) KBS 결산 승인안 국회 부결

-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한 공영방송 규제의 배경은 2003년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KBS의 전년도 결산 승인안이 부결된 것에서 비롯됨
 - 당시 국회는 한나라당 주도로 KBS의 결산 승인안을 부결하였는데, 이의 사유는 KBS가 예비비로 성과급과 개인연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예산집행을 했다는 사실이었음.
 - 이어서 국회는 같은 해 11월 국회법 제1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원에 KBS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음

2)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와 방송법 개정 요구

- 감사원은 이 요청에 따라 감사를 실시, 2004년 5월 21일 최종적으로 KBS의 감사결과를 공표함과 동시에 방송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하게 됨.
-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방송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요구 사항을 제시했음

- 첫째, KBS사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도록 하는 준거규정을 두는 방안과 국회승인 전에 감사원이 KBS의 결산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결산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
- 둘째, 경영평가 결과 부실경영이 현저한 경우 사장에 대한 경영책임추궁의 방법을 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
- 셋째, 이사회(11명) 구성에 있어 1명의 상임이사를 두며 경영전문가가 이사진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이사진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
- 넷째, 이사와 집행기관에 대하여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준용하고 집행기관과 간부직원의 비위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 책임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

3)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 추진 무산

- 방송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KBS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예산편성지침규정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과 KBS의 결산승인에 앞서 감사원의 감사가 선행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KBS 종사원에 대한 형법상 수뢰죄 등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음.
- 입법예고 되었던 방송법 개정안의 개정사유는 “국가기간방송인 K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국회심의회에서 지적된 사항 가운데 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위해 입법요구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국가기간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임직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및 결산서 확정 절차를 개선·보완하여 정부전액출자기관인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에 대한 합리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방송위원회, 2005)이었음
- 아울러 입법예고 이전 단계인 관계 정부부처 협의과정에서 이익잉여금의 국고납입

조항이 추가하였는데 이의 배경 역시 2003년 국회가 방송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KBS, EBS의 이익잉여금을 국고에 배당하지 않고 내부 유보하게 한 정관을 수정하도록 하여 국고에 납입토록”하라고 주문한 바에 따른 것이었음

- 구체적으로 방송위원회가 제시한 방송법개정 입법예고안(2005. 1. 17)의 취지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었음
 - 한국방송공사의 정관의 기재사항 중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에 책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제1항제6호)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상임으로 하여 한국방송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기능을 신장하고자 함(안 제46조제5항)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의 예산 편성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준거하도록 하여 한국방송공사 경영의 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제3항)
 - 한국방송공사의 결산승인 전에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방송공사의 결산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9조제1항, 제3항, 제4항)
 - 한국방송공사의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설립법인 방송법에 규정하고 주주인 국가에의 납입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59조의2)
 - 한국방송공사의 집행기관 및 일정한 범위의 직원은 형법상 수뢰죄 등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104조제2항)
- 이러한 입법예고안이 공표된 이후 KBS 및 KBS노조를 비롯하여 전국언론노조, 시민단체 등은 공식 의견 제출 또는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결국 이 입법예고안은 법안으로 완성돼 제출되지는 못하였음.
- KBS와 EBS의 경영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장치는 방송법 개정에 관한 논

의로도 수용 가능한 것인데, 2005년 1월의 방송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이 무산되고, 그 이후 이른바 ‘방송통신 융합법’의 제정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단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공영방송 경영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 방안이 나온 것으로 해석됨

III. 한국 공영방송 책무성 제도

1. KBS와 EBS에 대한 현행 규제 제도

- 그러나 새로운 방송법이나 공공기관 운영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한국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해 매우 다양한 책무성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우선, 프로그램 내용상으로 방송위원회가 방송 프로그램 심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광고방송에 대해서도 심의함.

- 방송위원회의 프로그램 심의(방송법 제32조)

제 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 ① 방송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③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해서는 안된다.

- 아울러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의 3개 분야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임. 평가결과는 방송채널 재허가시의 중요한 점수로 활용되기도 하며, 언론보도를 통한 간접적 규제효과를 지니기도 함.

-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방송법 제31조)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 ①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KBS와 EBS는 정기적으로 방송 재허가 과정을 밟고 있음. 이 때 방송위원회는 각종 실적을 바탕으로 방송사에 대한 심사를 벌이게 됨

- 방송 재허가를 위한 심사(방송법 제17조)

방송법 제17조(재허가등)

- ①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방송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방송법 69조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게 될 경우 방송 평가와 재허가 과정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됨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됨

– 편성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송법 제108조)

제108조 (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 방송위원회는 시청자불만처리 위원회를 운영,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시청자 불만처리 위원회를 통한 수용자 의견·불만 수용(방송법 제35조)

제35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 ① 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 ③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공영방송사는 일반 지상파 방송사(SBS 등) 및 보도전문채널사업자(예를 들어, YTN)와 마찬가지로 시청자 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자대표들로 하여금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청자 위원회에 의한 수용자 권익보호(방송법 제87, 88조)

제87조(시청자위원회)

-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 ③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공영방송은 매해 결산서를 방송위원회와 국회에 보내 국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 받는 한편, 확정 받은 결산서는 다시 감사원에 보내져서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방송위원회, 국회, 감사원의 KBS 결산 규제 (방송법 제59조)

제59조(결산서의 확정)

- ①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 회계년도의 결산서를 방송위원회 및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끝으로, 국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국회는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KBS와 EBS에 대한 것도 해당되는 것임. 실제로 2004년 국회가 감사원에 KBS의 경영에 대해 감사를 요청한 것도 이 조항에 따른 것이었음

- 국회요청에 따른 감사원 특별 감사(국회법 및 감사원법)

국회법 제127조 2항(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 ①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정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원법 제34조의 2항 (권고등)

- ① 감사원은 감사결과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행정 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이상과 같은 각가지 책무성 조항은 주로 주무부서인 방송위원회를 통한 규제이지만 국회와 감사원 등 여러 국가 조직이 공영방송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과 스스로 규제 받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즉,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무성이라는 두 개의 주요 가치의 실현에서 부족함이 노출되고 있음

2. 현행 공영방송사 책무성 장치에 대한 검토

□ 현재 KBS는 예산 계획에 있어 외부의 관여 없이 이사회 단독으로 이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독립성을 지니고 있음.

○ 기본적으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그 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에 준하는 통제와 감시, 의무, 책임을 부여해 왔으나 KBS는 1987년 동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었음

- 그러나 사회적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산에 있어서는 KBS는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 승인 받음으로써 이를 확정함. 아울러 KBS는 국회에 제출하는 것과는 별도로 방송위원회에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이를 감사원에 제출함으로써 감사원의 ‘검사’를 받게 됨(방송법 제59조)

□ 그러나 위와 같은 KBS의 책무성 절차는 다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우선, 책무성의 문제로서 KBS의 이사회가 KBS의 규제기관도 아니고 책임경영 기관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주요 재원인 수신료를 자체적으로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KBS 이사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 자체가 어색한 일임

- 또한, KBS는 경영에 있어서는 영리법인과 같이 매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주주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임

- KBS 이사회의 기능

방송법 제49조 (이사회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5.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아울러, KBS 경영의 최고 결정기관인 이사회 기능은 명시되고 있지만, 책임에 대한 것이 없어 책임 있는 경영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러한 책임 규정의 미비는 오히려 이사들의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즉, 자신들의 경영에 대한 의사 결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우려가 있는 것임

○ 독립성, 즉 언론자유 측면에서는 KBS에 대해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재허가심사 등은 감사기능이 중복되어 다양한 외부 기관의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 및 각종 규제 기관에 대한 피규제기관으로서의 대응은 업무의 효

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든지 일원화될 필요가 있음

- 더구나 이번에 시행된 공공기관 운영법은 감사원 감사, 방송위원회 방송평가, 방송 재허가 심사 등의 중복 규제에 새로운 규제를 더하는 방식으로서 방송의 독립성 및 업무 효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 결국,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경영합리화 및 효율성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현실적인 책무성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임

IV. 공영방송의 책무성과 독립성

1. 공영방송 책무성의 기원과 변화

1) 책무성의 뜻

- 사회가 공영방송에 민영미디어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것은 수신료 제공 및 지상파 주파수 할당이라는 특혜에 대해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임.
- 여기서 책무성(accountability)이란 책임(responsibility)과 매우 혼동되는 개념으로서 책임은 기본적으로 이미 정립되어 있는 의무사항들을 말한다면, 책무성은 명시된 기준이나 그 의무사항에 합추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수행의 결과를 강제하고, 이를 사후적으로 측정·평가하는 과정을 뜻함(강형철, 2006)
- 프릿처드(Pritchard 2000)는 “미디어의 책무성은 미디어 조직들이 그들의 수용자들에게 자신들의 활동을 해명하도록 의무지우는 과정”(p. 2)이라고 정의함
- 책무성의 대상은 사회 내 영향력 행사자들로서 공적 규제기관, 압력 및 이익단체, 수용자, 여론 등으로서 미디어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존재, 발전하는 것임.

- 맥퀘일(2003)은 미디어가 신세를 진 많은 청구인들이 있다는 명제로 책무성의 대상을 말하고 있음. 이들은 미디어에 대해 각자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미디어가 실천한 바와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미디어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항존하는 이면에는 미디어 또한 권력과 영향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그림 2> 미디어 책무성의 대상



출처: 맥퀘일(2003)

- 쉬베르트센(Syvertsen, 1992)은 영국과 노르웨이의 공영 방송을 비교하면서, 한 사회의 방송제도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 아래 일반 세력(general forces)과 이해 당사자들(interests)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 낸 합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함. 여기서 이해 당사자들이란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산업 부분과 국가 내 각 부처들, 그리고 대중(public)등으로서 공영방송의 책무성 대상을 말하는 것임.
- 공영방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든 그렇지 않든 사회 내 많은 책무성 대상을 지니고 있고 이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자신들의 실적을 설명하고 해명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됨
- 공영방송이 책무성의 의무를 게을리 하게 될 때 사회 내 역할자들은 공영방송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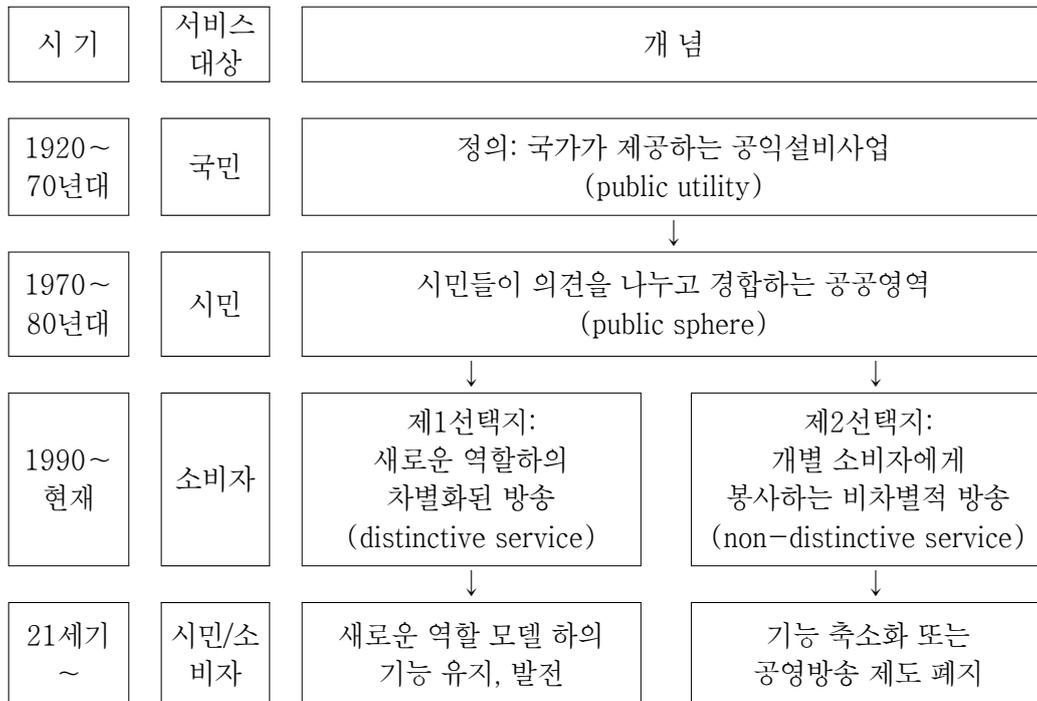
한 강한 규제에 나설 것이며, 이러한 외부의 규제는 ‘독립성’이라는 공영방송의 주요 가치에 상치되는 것임

- 이에 따라 공영방송은 스스로가 사회 내 구성원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책무성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공영방송 책무성 개념의 변화

- 공영방송의 책무성 확보 장치는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서구의 공영방송은 시대상황에 따라 여러 변화의 길을 겪어 왔고 ‘공공설비’의 개념에서 출발해 ‘공론의 장’의 개념으로 변화해 왔음.
- 현시점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신자유주의 사조의 환경아래 공영방송은 ‘새로운 차별성 모델’과 ‘시장 모델’ 사이의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 (<그림 3>)

<그림 3> 공영방송의 정의 변화



- 공영방송 개념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공영방송을 우편, 전기, 도로, 철도, 수도 등과 같이 국가가 제공하는 공익설비사업(public utilities)으로 보는 것임.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개념임
 - 이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관리가 필수적임
 - 한국에서도 민주화 이전 오랜 기간 동안 공영방송은 국가가 행하는 공익설비사업으로 취급된 바 있음.
 - KBS의 종사원은 기자든 PD든 모두가 주사, 사무관 등의 공무원 신분을 지니고 있기도 했음.

- 공영방송 발전의 두 번째 단계는 공영방송이 전기, 철도, 수도와 달리 인간의 정신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공영역’, 즉 시민들이 의견을 나누고 경합하는 장(場)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상정하는 것임.
 - 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뿐 아니라 능동적인 정치 참여자로서 의견을 나누고 경합하는 장(場), 즉 공공영역을 뜻하는 것임. 이러한 개념은 1980년대 초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을 때 공영방송사들이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내세운 기능이었음
 -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의 공영방송도 국가사업의 지위를 버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중간지대인 ‘공공영역’으로서 자리매김해가고 있음. KBS를 정부투자기관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러한 변화의 상징이었음.

- 20세기 말부터 디지털 기술에 의한 다채널 방송은 ‘시장주의’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냈고, 이 사조는 ‘공중’의 개념을 ‘수용자’로 치환, 공영방송을 일반 사영방송과 차이 없이 개별 수용자에 봉사하는 제3의 공영방송 모델을 상정하게 되었음.
 - 이 기조는 공영방송을 상업방송과 같은 기준에서 평가하고자 하며 때로는 공영방송

무용론을 내세우며 이를 민영화하려고 함.

- 이러한 와중에 권위주의 국가 시스템 아래 공영방송의 정체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한국의 공영방송은 과거의 유산을 덜어냄과 동시에 시장주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임
- 공공기관운영법은 공영방송을 공익설비사업과 구별하지 않으려는 과거형 모델을 상정함과 동시에,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공영방송을 시장의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새로운 모델(<그림 3>의 제2선택지)의 기조로 파악됨

2. 공영방송 책무성 : 귀책성 vs 대책성

- 공영방송의 조직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조직관리방식과 규제, 책임성 확보, 외부규제 등의 체제를 갖추어야 함
- 그런데 현재의 KBS처럼 비상임 이사회를 두어 경영관련 최고 의결 기관이 되게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의한 포박이나, 정보 부족에 의한 집행기관 의존이라는 부작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비상임 이사회는 경영에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 경영에 대한 중요 결정을 내리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성을 지니고 있음. 이에 따라 현실적인 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는 이사회보다는 사장 등 집행기관에 부여되는 것이 사실임. 현재의 이사회 방식을 유지하려면 재정지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하며, 아울러 수신료 책정을 위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임
- 많은 논자들은 독립성 확보와 함께 공영방송사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논하고 있음
- 박기성(2004)은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영방송의 경우 경영평가 및 감독과

편성 규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과 국회에 대하여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주장

- 김승수 (2004)는 “KBS는 공적 소유이자 수신료라는 공적 자금을 쓰는 국민의 기업만큼 다른 어떤 방송이나 매체보다 경영이 투명해야 한다”며 “KBS의 회계를 외부 공인 회계기관에게 맡긴다거나, 경영 업무의 책임자를 외부 전문가로 영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함. 김승수는 아울러 KBS에 결합 재무제표 방식을 도입, 전체 재원 흐름을 조명할 수 있고, 국민의 재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공익적으로 운영되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해외의 경우 정치, 사회, 역사적 배경에 따라 특유한 책무성 제도를 지니고 있으나, 근본정신은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동시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임

- 영국의 경우, BBC의 예산은 수신료 수입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수신료 금액을 정하는 정부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수신료는 일정기간(현재는 물가에 연동함) 미리 정해 놓은 원칙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독립성의 훼손 폭이 크지 않음

□ 그러나 지나친 책무성 제도는 방송의 창의성을 위축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 공영방송의 공공 책무성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책무성 제도가 외부에서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자칫 공영방송의 핵심 역량인 제작진의 창의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임

-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지오지나 본(Born, 2003)은 BBC가 지난 1990년대 동안 신관리주의 기조아래 도입한 체계적인 감사와 책무성 제고 절차들은 문화적 임무를 갱신하는 것, 창의성을 발전시키는 것, 조직으로서의 BBC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 생산물의 질을 고양하는 것 등의 공영방송의 핵심적 임무들을 말살했다고 비판함. 아울러 이러한 절차는 BBC의 독립성마저도 해쳤다는 것임

- 폴란드 방송위원회 야쿠포비치(Jakubowics, 2003)도 이른바 “항목 체크 방식(box-ticking)” 책무성 확보 제도가 공영방송의 현대화를 방해하고, 현저히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맥퀘일(2003)은 공영방송의 책무성 제고 장치를 도입함에 있어 귀책성(liability) 모델보다는 답책성(answerability) 모델에 기반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함.

<그림 4> 책무성 모델 비교

답책성		귀책성
사회적 또는 도덕적 토대 자발적 대화와 토론 협력 관계 비물질적 처벌 질에 대한 관심	vs.	법적 토대 강제적 공적 판결 적대관계 물질적 처벌 피해에 대한 관심

출처: 맥퀘일(2003)

- 여기서 귀책성이란 공식적으로 규정된 의무사항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겼을 경우 벌이 주어지는 것을 말함.
- 귀책성 모델은 주로 미디어 내용이나 서비스의 질과 관련하기 보다는, 피해가 주장되고 미디어가 비난받는 곳에서 발생하며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들과의 갈등 관계를 수반함. 이의 결과는 해명이나 화해가 아니라, 보상과 처벌이며 미디어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임
- 그러나 답책성은 미디어에 대한 요구와 불만이 제기되는 많은 상황에 관련 있는 것으로서, 미디어가 비록 이에 대한 귀책성은 없더라도 어떤 설명과 논쟁을 요구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함

- 답책성 모델은 언론의 자유와 가장 모순이 없다는 데 장점이 있는 것임

3. 결론 : 한국 공영방송 책무성 강화 방안

□ 결국, 공영방송에는 답책성 모델에 따라 최소한의 외부 규제를 두고, 자발적인 책무성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일 것임.

- 예를 들어, 현재 공영방송의 결산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방식은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미흡할지라도, 국회에서의 논의 자체가 공영방송의 사회적 위상에 대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 사실임.

- 이러한 용도만으로도 공영방송은 자체의 답책성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임

○ 아울러, 현재 매해 받게 되어 있는 방송 평가를 5년 단위로 조정하고, 이를 허가 기간과 연동함은 물론, 수신료 금액 산정 방식의 개정 주기로 삼을 때 보다 효과적인 공영방송의 책무성 평가와 관리가 가능할 것임

- 현재의 방식은 매해의 방송 평가와 3년마다 갱신기간에 이루어지는 재허가 심사가 중복되어, 오히려 평가의 강도가 약화되는 단점이 있음

- 영국 BBC의 경우 10년마다의 칙허장 개정은 공영방송의 그간 수행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앞으로의 임무에 대한 구체적 할당이 주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음

○ 또한, 자체 경영평가, 연차보고서, 시청자에 대한 약속 공표 및 이행 실적 등이 충실하게 작성되어 시민들에게 공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 평가하는 방식이 이루어

져야 하겠음. 현재 KBS나 EBS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경영평가, 연차 보고서, 시청자에 대한 약속 및 이행에 대한 것들로써 시민이 KBS의 활동 상황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다분히 요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공영방송사를 일반 공공기관과 함께 묶어 동일한 규제의 틀을 적용하기보다는, 공영방송사는 별도의 방식이기는 하되 자세한 경영정보 공시 등을 통한 책무성 제고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것이 바로 귀책성이 아닌 답책성 모델을 통한 책무성 확보 모델이 될 것임
 - “언론기관은 중립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공영방송사의 주장은 옳은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사회적 책무성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님. 공영방송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지 형식적이지 않은 경영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 현재의 각종 규제 형태를 통합하고, 시청자위원회 위상 강화 등 현 규제 방식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식일 수 있음
 - 답책성 모델은 거대 미디어 기업의 ‘양심’에 맡겨둔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논의했듯이 공영방송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활동의 범위가 제한되는 정치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미디어 기업도 답책성 의무를 쉽게 저버리기는 힘들다는 점에 주목해 할 것임
- 끝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책무성 강화방안은 그에 대한 통할 시스템(governance system)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 기구 문제의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함.
 - 현재도 이미 공영방송위원회, 경영위원회, 통합방송위원회 등 공영방송의 통할시스템으로서 각종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데, 현 시점에서 이뤄지는 어떠한 책무성 강화방안도 이러한 변화의 논의 틀에 맞추어야 하겠음

* 참고문헌

강형철 (2006). 사이버커뮤니케이션과 공익.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17호 (2006-1), 5-46.

김승수 (2004). 역사적 전환기 KBS개혁에 대한 소고. 방송학회 주최 《공영방송 위상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송정책 방향》 세미나 발제문. 9월 10일 방송회관 3층 회견장.

박기성 (2004). 종합통신법 제정과 분산규제제도 운용. 방송학회 주최 《공영방송 위상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송정책 방향》 세미나 발제문. 9월 10일 방송회관 3층 회견장.

방송위원회(2005). 방송위원회 공고 제2005-3호: 방송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월 17일.

Born, G. (2003). From Reithian ethic to managerial discourse: Accountability and audit at the BBC. *Javnost: The Public*, vol. 10(3). 63-80.

Jakubowicz, K. (2003). Endgame? Contracts, audit, and the future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Javnost: The Public*, vol. 10(3). 45-62.

McQuail, D. (2003). Public service broadcasting: Both free and accountable. *Javnost: The Public*, vol. 10(3). 13-28.

Syvvertsen, T. (1992). Public television in transition: A comparative and historical analysis of the BBC and the NRK. Oslo: Norges Allmenneviteneskepelige Forskningsrad. Levende Bilder nr. 5/92.